

인권경영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인권경영 선언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정직, 성실, 신뢰'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지향하며,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인 인권과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을 이러한 책임에 대한 실천으로서 추구한다.

이를 위해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의 인권 원칙을 지지하며, 이에 근거한 '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을 본 인권경영방침을 통해 내재화하고자 한다.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전세계 모든 사업장과 이에 속한 구성원에게 본 인권경영방침을 적용하고, 이를 실현하고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 확립, 모니터링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더 나아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이슈로 다루며, 본 방침을 당사의 경영활동의 영향을 받는 고객, 협력회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도록 한다.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TANIZAMA KEN

인권경영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인권경영 원칙

1. 인권 존중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모든 구성원 및 회사 그리고 협력사와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를 침해, 학대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다양성 존중 및 차별금지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모든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채용, 승진, 교육, 보상 등에 있어 모든 구성원에게 기회의 평등을 균등하게 제공하며,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노동자의 모성 보호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3. 강제노동 금지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노예제도, 인신매매, 채무 노동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 육체적 구속을 통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벗어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및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아동노동 금지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유니세프의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RBP),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있는 노동원칙, 그리고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만 15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는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포함한 안전보건 상 위험 •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5. 결사의 자유 보장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사업장이 있는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

인권경영

6. 안전 보건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임직원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청결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여 작업자를 보호한다.

7. 임금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모든 구성원의 임금은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한다.

8. 근로시간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정규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강요하지 않으며, 근로 제공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9. 지역주민 인권 보호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환경, 안전보건, 거주지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전통적 가치를 존중한다.

10. 고객 인권보호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인다.

11. 환경권 보장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환경에너지를 경영활동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 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는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